

한경훈 / 3~4월 / 기초 GS / 1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15621	21	13	18	9	61	1	1.85%	6	54
515450	19	11	10	12	52	2	3.70%	5	
515585	17	13	15	7	52	2	3.70%	5	
515631	17	13	17	5	52	2	3.70%	4	
515461	19	12	12	7	50	5	9.26%	5	
515682	18	10	15	7	50	5	9.26%	5	
514114	21	12	8	8	49	7	12.96%	5	
515457	20	12	14	3	49	7	12.96%	5	
515515	16	11	13	9	49	7	12.96%	4	
515366	18	11	11	8	48	10	18.52%	5	
515580	17	13	11	7	48	10	18.52%	4	
515446	19	10	12	6	47	12	22.22%	5	
515577	22	9	12	4	47	12	22.22%	5	
516191	15	11	14	7	47	12	22.22%	5	
515393	16	12	10	8	46	15	27.78%	6	
515491	16	14	9	7	46	15	27.78%	5	
518911	17	12	14	3	46	15	27.78%	5	
515581	13	10	15	7	45	18	33.33%	5	
515601	19	10	11	5	45	18	33.33%	4	
515456	21	11	12	0	44	20	37.04%	5	
515615	17	10	11	6	44	20	37.04%	4	
515429	16	11	11	5	43	22	40.74%	5	
516189	18	9	11	4	42	23	42.59%	4	
515462	13	13	10	5	41	24	44.44%	5	
515518	14	12	8	6	40	25	46.30%	5	
515612	13	9	10	8	40	25	46.30%	5	
515447	19	9	7	4	39	27	50.00%	5	
515729	18	12	9	0	39	27	50.00%	4	
515459	11	11	15	1	38	29	53.70%	4	
515583	12	13	10	3	38	29	53.70%	4	
515586	11	12	11	3	37	31	57.41%	5	
515588	18	11	8	0	37	31	57.41%	5	
515482	0	11	18	7	36	33	61.11%	6	
519891	15	8	8	5	36	33	61.11%	4	
515370	12	10	9	4	35	35	64.81%	5	
515578	15	13	7	0	35	35	64.81%	5	
515652	16	9	7	3	35	35	64.81%	5	
515844	11	11	13	0	35	35	64.81%	4	
516037	13	11	8	3	35	35	64.81%	4	
515520	11	10	11	2	34	40	74.07%	5	
0	16	10	7	0	33	41	75.93%	5	
515479	13	9	8	2	32	42	77.78%	4	
516036	11	10	7	4	32	42	77.78%	5	
515492	14	9	6	2	31	44	81.48%	4	
514532	14	10	6	0	30	45	83.33%	5	
515466	12	12	6	0	30	45	83.33%	5	
515594	13	7	10	0	30	45	83.33%	4	
515355	8	11	6	3	28	48	88.89%	5	
515423	6	11	9	2	28	48	88.89%	5	
515665	0	12	13	3	28	48	88.89%	5	
515675	13	6	3	6	28	48	88.89%	5	
515483	10	12	2	2	26	52	96.30%	4	
515690	13	10	0	0	23	53	98.15%	4	
515506	10	8	2	1	21	54	100.00%	5	

한경훈/3~4월/기초GS Plus/16회/1번	채점자
	김시연
<p>1. 전반적인 총평</p> <p>'국제출원'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생소한 주제여서 그런지, 유난히 문제1번, 2번을 먼저 작성하지 못하시고 문제3번, 4번 작성 이후에 풀어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p> <p>답안지 문제 풀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나, 답안에 자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p> <p>국제출원의 경우,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1)</p> <p>국내 출원일자로 소급되는 효과는 해당 지정상품에 한합니다. 이를 놓치시고 지갑과 재킷 모두에 대하여 소급효과 있다고 써주신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p> <p>재킷에 대하여 소급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출원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니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주세요.</p> <p>상표법은 문제를 읽으실 때, 지정상품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p> <p>또한, 이렇게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론에서 (1),(2)로 번호를 매겨 그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게 써주시면 좋습니다.</p> <p>[2] 설문(2)</p> <p>22점 통배점이었고, 이렇게 배점이 큰 문제에서는 최대한 다각적으로 자세하게 풀이해 주셔야 합니다.</p> <p>또한, 표장이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가 아닌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꼭 표장의 동일/유사 판단을 짧게라도 해주셔야 합니다.</p> <p>가족지갑에 대한 판단시점 소급효과로 인해, 38조 1항이 문제될 수 있으나 대체규정으로 인해 등록에 문제 없다는 논점을 놓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p> <p>다만 이는 설문(1)에서 판단시점을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만 적을 수 있는 연계 논점이었습니다. 꼭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p> <p>개정법으로 인해, 국제출원에서 분할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세요.</p>	

거절이유를 생각보다 많이 찾아주시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엄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으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사유만 찾아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적어주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문에서는 고득점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3. 소결

1,2회차 때만해도, 이렇게 20점이 넘는 통배점 문제가 나오면 다들 분량을 채워 주시지 못하고 시간 조절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적정 분량을 채워 주시고 적당히 시간 배분을 잘 해주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채점자 입장에서 보람있었던 회차였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고 답안 작성 연습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답안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훈/3~4월/기초GS Plus/16회/2번	채점자
	김시연
<p>1. 전반적인 총평</p> <p>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은 한번 정리해두시면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꼭 이번 기회에 정리해주세요!</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1)</p> <p>통상의 출원과 달리, 지표단 특유의 제출 서류를 2가지 요합니다. (1)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과 (2) 지리적 표시 정의 증명 서류입니다. 다들 내용은 잘 써주셨지만, 이렇게 2가지 서류를 첨부해야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기 위해 앞에 작은 숫자라도 표시해주시면 가독성이 확 높아집니다. 출원인적격을 누락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또한, 유통업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출원인적격이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p> <p>[2] 설문(2)</p> <p>해당 사안 또한 양 표장의 차이점이 존재하므로(해당 사안의 경우 특히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사판단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합니다. 문제를 풀다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답안지에는 당연히 유사하다는 전제로 기재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또한, 무효사유를 제대로 찾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안이니 다시한번 문제 꼼꼼히 읽어주세요.</p> <p>3. 소결</p> <p>유독 문제1, 2를 먼저 풀지 못하시고 문제3, 4 뒤에 적어주신 분들이 많았던 회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적정 분량으로 내용과 목차구성면에서 짜임새 있는 답안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길었던 2달간의 GS의 마지막 회차라서 마음이 늘어지실 수도 있으셨을텐데, 끝까지 열</p>	

**심히 작성해주신 노력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7월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경훈/3~4월/기초GS Plus/16회/3번	채점자
	강경민
<p>(1) 설문 1</p> <p>제 33조 1항 3호 사안포섭 시, “상표가 어떠한 ‘관념’ 을 가지므로, ‘지정상품’ 과의 관계에서 ‘거래실정’ 상 성질표시로 직감되므로 3호에 해당한다.” 라고 판례 문구대로 정교하게 서술해주시는 경우 답안 인상이 훨씬 좋아지고 가독성 측면에서도 좋으니 참고해주세요.</p> <p>또한, 제 33조 2항 개정법에서 제 33조 1항 7호가 포함되었음을 놓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개정법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p> <p>사용에 대한 식별력 취득 여부 사안포섭 시, 실사용상표의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 있는지, 고려 결과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두 단계로 나누어서 작성한 답안이 훨씬 깔끔하고 답안 인상에도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판례 사안 문제이므로 “단박 대출과 함께 사용된 문자부분이 대부업에서 ‘흔히 쓰이는 표지’ 이므로” 등의 판례 문구를 그대로 이용하여 사안포섭 할 수 있도록 판례집을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 2</p> <p>단박대출 부분의 효력제한 여부 논점을 놓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사안의 경우 등록 가부 외에도 침해 판단 시 요부관찰, 효력제한이 동시에 논점이 될 수 있으니 꼭 정리해서 실수 줄이도록해주세요.</p>	

한경훈/3~4월/기초GS Plus/16회/4번	채점자
	강경민
<p>(1) 설문 1</p> <p>제 34조 1항 20호, 21호가 주논점인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판례 사안이 없으므로 갑이 국내 사용 준비 중이라는 점, 일본 등록 상표의 존재 등 문제 조건을 활용하여 각 조문의 요건을 “모두” 포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취소심판은 어떠한 이유로 불가한지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답안을 작성해주신 분들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제 35조 1항의 극복 조치로서 이의신청, 정보제공, 공존동의서 제출 등을 얼마나 다각적으로 서술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간혹 조약우선권 주장과 상표관리인 선임을 빼먹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외국 등록 상표가 나오는 경우, 권리자가 재외자인 경우 해당 논점 빠트리는 실수 하지 않도록 연습해주세요.</p>	

[문제 1]

2. 실문(1)

1. 국제상표등록권 (법(83조))

(1) 이익 및 취지

상표의 국제채널(리)에 ^{본국관청에서의} ~~취지~~ ^{기반} 출원이나 등록은
각각 타국에서 변받을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사항은
~~본~~ 타국에서의 기록 등록을 전제로 국내로 진입한 국제
상표 등록권이다.

(2) 출원 출원일 (법(83조 2항))

지정국 관청인 한국 관청으로 온 국제출원을 이 법에 따른
출원 등록출원일(법(83조 1항),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 4)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로
본다.

(3) 대체 (법(83조)) 및 2024년 개정법

대한 국내에 ① 국제상표등록 출원 이 상표권인한 상표에
대하여 ② 국제등록의 이전 등록된 국내 상표등록있는 경우
③ 지정상품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국내 상표출원일에 출원
한 것으로 본다. 2024.5.1 개정법은 상품범위 시대한
법(83조 1항)을 삭제하여 그 요건 완화하였다.

2. 등록요건판단 심사정

(1) 재킷 - 2023.3.10

^{본국관청에}

무엇 명목에 2023.3.10에 접두하고 1개월이내에

특허사목국의 서류가 접수된 바, 불구판청의 서류 접수한
2023. 3.10 ~~후~~이 국제등록일이 된다. (의제서 제29(4))

(2) 가속제지급 - 2021. 3. 1

가속제지급은 2021. 3. 1 후반되어 ① 국제등록일인 2023.
3.10 이전인 2021년만에 등록된 ② ~~甲의~~ 국내출원인
상표 등록이므로 법 183조 후단 인정되어 국내출원인
2021. 3. 1 이 등록일인 판단의 기준시점이 된다.

Ⅱ. 석문(2)

1. 문제를 해결하기 - 법 제 181항 1호

(1) 의의 취지

상표권 침해자가 보호하는 일반 소비자 인-공공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표권 침해의 동일-유사성이나 상표권 침해
등록받을 수 없다.

(2) 사안

甲의 지정상표 중 '~~상표~~ 재킷'은 2의 상표권 지정상표인
'재킷'과 동일하는, 상표도 이관과 후장이 유사하므로
분해당한다.

2. 법 제 182항

다만, 법 제 181항 1호 '타인' 판단은 등록여부 결정시 기준
으로 하는 바, 甲의 등록여부 결정 이전에 2상표 등록 소원태도
소원사유상관없이 본 ~~상표~~ 등록 거절이유 등록 가능하다.
이하 甲이 권리 취득한다.

3. 2 등극소속권위판권치① - 무효심판 및 심사중지명치

(1) 이익 및 취지

분쟁의 발본적 해결수단으로, 하지않는 상소권은 소급적인 소멸시키는 제도로이다.

(2) 甲 청구인적격 (조3)

甲은 그의 상표 등록 관속으로 인해 상소권원거정 이유통지라는 법률상 분이익을 받을바, 이해관계인정되어 무효심판의 청구인적격 인정된다.

(3) 무효사유① - 법제처(항) 1항 (조3)

(1) ~~원방~~ 이익 및 취지

원방대상상대 청구자에게 포해가지려는 목적의 상표는 등록받을수없다.

(2) 사안

~~甲~~상표는 명목에서 ① ~~2 등권시안 2022~~. 2 등권당시 이미 의류브랜드로 널리알려 졌고 ② 상표 'BARBOURS' 와 ~~甲~~상표 'BARBOUR'는 외관이 마지막 철자 'S'를 제외한 상이한 글자로 '바버', '바버시'로 유사한바, 유사상표의 사용하전 은인-공공있는 정수로 유사한상표이고, ③ ~~은~~ 이미 ~~甲~~으로부터 의류를 도입하던 자이므로 ~~甲~~의 신음이 결함하여 부당한이익을 부정한 목적 인정된다. 따라서 2 등극기는 법제처(항) 1항 무효사유 있다.

(4) 무효사유② - 법제처(항) 1항 리항 (조3)

1) 의의 및 취지

따라서 6조 7 반영한 규정으로, 2015당사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로서 일정관계에 있는 자가
권리자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2) 사안

① 석문상 부분형이지만 ② 상표는 2국원 당시 영국의
등록되었을 수 있다. ③ ④ 상표의 유사한 상표는 ⑤ 유사
비유상 표에서 ⑥ ⑦ 중의 등록을 받지 않고 출원하였으나,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있었으므로 본 호건 한쪽하므로 2국원은 법제 168
그는 문제사유 가능성 있다.

(5) 문제사유 ㉞ - 법제 43 (항 20) (저국)

1) 의의 및 취지

권리자 아닌 자가 선의·생실·원칙에 위반하여 한 국원은
등록을 불허하였다는 취지로, 일정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의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권 비추임을 받고, 동일·유사
비유상 표·상표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2) 사안

① 2호 ② ③ 의류를 수입·판매 등을 하여 국내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하는 등 일정관계에 있으면서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③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④ 상표·상표 중의 유사비유상 표,

반에 우선순위가 존재할 수 있다.

(6) 소결

따라서 10년 2기까지 무효사판 청구하기, 적자가 확정된 때까지 5 심사중지요청 (10리항) 할 수 있다.

4. 2권치 ② - 포기 양도권유

2에게 해당 등록은 법제2항 1호 20년 2년의 무효사유 있음을 알리고 상호등록 포기나 양도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5. 2권치 ③ - 공존동의제도.

(1) 2024.5.1 개정법

기존 ^{상호} 유사해시나 내 있다면 사유로 등록 거절되는 경우 많고, 이를 피하기 위해 상호양도협상을 하는데 번거롭기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5.1 개정법은 상호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하여 유사해시나 저촉이 매하여 공존동의를 통해 법제2항 1호 1호, 2호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2) 다만

2상호의 무상호 유사하고, 상호공존동의는, ~~20년~~ 2년부터 공존동의서를 받아 등록부터 결재시점까지 제출함으로써 법제2항 1호 1호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15

[문제 2]

2. 식문(1)

1. ~~무출판유형~~ - 지적재산단체특장 (법22(항 6호))

(1) 지적재산단체특장 ~~특장~~ 취지

단체특장권자 및 소속단체원 보호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사이 보호하기 위한 특장이다.

(2) 법22항 6호.

지적재산단체특장이란 지적재산권사용한수있는상태를 생산 제로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기 위한 ~~특장~~ 특장이다

(3) 지적재산 (법22항 4호)

① 지적재산권 상태의 표지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내 생산 제로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낼 표시를 함하며,

② 판례는 표지등이 본질적으로 비롯된 동안, 자연재미, 인공미인등기타하여 해당지적특장권이 없으면 당해 표지등이 나올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한다.

(4) 사안

특의 특차는 '반생균'이라는 지적특우치의 기후나 사진 양도. 권리특이적당히 만들지는 자연재미인미인해 그 표지가 우수한바, 지적재산정미이 부합하.

무법인은 그 특차를 생산하는 공작들이 해당권법인이므로

특히 '보성복차' - 복차는 지리적 표시 단체 대표 회원이 가장 적절하다.

2. 출원절차

(1) 주체적요건 (방법)

~~관련~~ 개정법도 법 제 2항의 요건에서 '합으로 라는 요건 제외 하더라도 지리적 표시가 된 상품은 생산. 판매하는 자만이 아니라 유통업자로 함께 포함될 법인으로 주체적 요건 만족하는 것으로 보나, A법인은 주체적요건 만족한다.

(2) 제출서류 사용에 관해

- 1) 단체대표 ~~관련~~ ~~관련~~ 서류 사항은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 2 조항)
- 2) 보성복차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 2 조 56호)

3. 등록 가능성 - 가능

(1) 법 제 2 조 1항 4호

지리적 표시 단체 대표의 경우, 법 제 2 조 1항 4호의 '실지'나 ~~현~~ 법 제 2 조 1항 4호의 현재한 지리적 명칭이 ~~대~~ ~~이~~ ~~고~~ ~~있~~ ~~어~~ ~~는~~ ~~것~~ ~~이~~ ~~지~~ ~~아~~ ~~니~~ ~~하~~ ~~는~~ ~~다~~.

(2) 사안

따라서 A법인이 '보성'이라는 복차의 삼지나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등록 가능하다.

Ⅱ. 실문(2)

1. 문제의 문제.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 있는 상태에서 2이 주원한바, 특유거짓이유인 범저리양 음을 표상한 거짓이유가 존재한다.

2. 범저리양 음(商標)

(1) 의미 및 취지

기존 표지음은 자타상동시변적 및 등록가능성이 없는 음을 발음하였다.

(2) 사안

2 표지에 자타상동인 '복차'의 산지인 '포성' 표상되어 있지만, 변리서변적 있는 '연리음'의 구성과 함께 구성된바, '산'으로 표현해당하지 않아 본거짓이유 없다.

3. 범저리양 음(商標)

(1) 의미 및 취지

현재한 지리적 표시음은 자타상동시변적 및 등록가능성이 없는 음을 발음하였다.

(2) 사안

구본의 마찰까지로 변리서변적 있는 표지인 '연리음'과 함께 구성된 표지인바, '산'으로 표현이 중독되지 않아 본거짓이유 없다.

4. 범저리양 음(商標)



(1)의역 및 취지

선등록 지리적 단체등록권지반하리, 지리적단체에 대한 일반등록지상리방호위해 선등록 지리적 단체등록 가능성유시한 상등록 지리적상동가능인하리
입상등록이없는 상공이권한한상도는 등록받을수없다.

(2)사안

1) 상등록이사처부 (주지주)

선지리적단체등록라리관계에서 선지리적단체등록이가능하리유사상동가능부가되는바, 주지주인 '보생농차'의 2상등록중 '보생농차' 동일하리, 선등록이있어도 지리적단체의 50차간은인공로 우려있으므로 이도상등록이사하다.

2) 부본해당처부 (주지주)

2도 선등록지리적단체등록라리관계에서 상등록이사하리, 상동한 '농차' 동일하리, 선해당한다.

4. 변주-등록부하

2상등록권한범주하리(상동) 해당하여 등록받을수 없다.

변주, 및사정아님!

[특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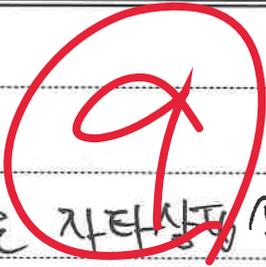
5. 설문(1)



1. 심사관 ~~취~~ 판단 타당여부 (적극)

(1) 법저권 1항 3호, 7호 의의 취지

기술개념상이나 실질적 없는 주장은 자타상동 실질적이나 주장적응성 없이 등록 받을 수 없다.



(2) 판단 기준

판례는 법저권 1항 3호, 7호 해당여부를 2상도까지 고려
있는 관동, 지상, 상동 사이의 관계. 거대 실질 등은 고려
하여 개별 개별 판단 하여야 한다 고 한다.

(3) 사안 - 심사관 판단 타당

수상 상동 '단박대출'은 '대부임'과의 관계에서 '신속한
대출', '단박기 바르 대출' 등 성질은 차별 시킴 을 위해,
실제 그런 상동 항 고 하는 수 대부임 이 많아 지 고 있는
거대 실질 인정 되 는 바, 법저권 1항 3호 내지 7호 에 해당
한다 는 심사관 판단 타당 하다.

2. 무의 등록우회 방지 - 법저권 2항

(1) 의의 취지, 목적

일반수업자 신용 보호 하 는 사용 주의 적 이 는 가 이 한 취 지 고,
① 추천 인 이 추천 전 부 사 용 한 것 과 ② 등록 여부 결 정
시 에 인 반 수 업 자 간 특 정 인 의 상 동 의 추 척 은 인 사 된
경 우 ③ 사 용 한 상 동 의 ④ 사 용 한 상 동 이 한 해
⑤ 법저권 1항 3호 내지 7호 에 해 당 하 는 것 을 등록 할 수 없
는 것 이다.

(2)사안

특정 ~~특정~~상표를 사용하여 ~~실사용~~상표 1,2를 사용하여
 주문한바, 상표범위와 특정인의추천인사유있는지
 여부가문제된다.

3. 상표 동일여부 (제3)

(1)원칙

판례는 사용상표가 만하여 본규정 적용할수있고, 유사
 상표는 적용될수없으나, 사의등등시공민한상표는 본규
 조 '사용상표'에 포함된다고한다.

(2)부가사용의 경우 (判例)

상표가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주원
 상표가 사용상표 안에서 동일성나 독립성을 ~~제~~가지고
 사용되고있는지 가능하다한다.

(3)사안의 경우 - 상표중인

- ① 특정 ~~특정~~상표의에 다른 구성을 부가한 ~~실사용~~상표라
 실사용상표를 사용하고있지만
- ② ~~특정~~상표 '단박대줄'이 부가하여사용한 '인터넷', '전반'
 등의 표지는 지점상표인대복합과 관련하여 혼이
쓰이는 표지에 불과하다
- ③ '인터넷'과 '단박대줄'의 색깔을 다르게하는등 '단박대
 줄'과 다른 표지를 독립성이 느껴지게 사용하고
 있는

㉔ 심사대상과 미심사대상과 2 개에서 미심사는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채 사용되어 있다면 할 것이다.

㉕ 따라서 모든 사용안상권을 추천하였다.

4. 수익자간 추천도시인사(재무)

(1) 법적해석원칙

판례는 특정인의특성이부적당한 특정 기대세적인 권리를부터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하면 책임하여야한다.

(2) 인사로 판단시 고려요소

판례는 사용상도의 인사로 취급판단시 사용기간, 방법, 태도, 양리실적, 양리비, 수익기간인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

(3) 사안 - 수익자간 추천도시인사

① 모든 씨앗년도 10일 경부터 계속하여 상도를사용 하고있고,

② ~~2022년~~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병행 이나신물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양리하여 매년 10만 원 이 양리 등으로 양리비로 5000, 원가액을 지급하여 2024년 2월이이므로 대법원까지 391이 이르는 등

㉖ 모든사정 종합고려하면 미심사는 전적으로 수익자간 추천도시인사였다고 할 것이다.

5. 전로 - 33조 2항 주장 증명



따라서 모든 자신의 사용실적을 ~~증~~ 주장-증명하여
법정서 2항을 제때 받아 법정서 1항 1호 1호의
거절이유증보하는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실용(2)

1. 특허청해명부

(1) 청해명부(법(102))

- ① 유효한상도권의 ② 보호대(147) ③ 상도권은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④ 사용자에게 지극한 원 없어야
하는 ⑤ 권리행사의 목적 제한 사유 없어야 하는
⑥ 상도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행동이 아니어야 한다.

(2) 사안

- ① 상도권 없음 ② 무사상상도인 '대부분'과 그
사용상도 '대부분' 인정하고 ③ 2에게 상도권 없음
④ 무의 권리행사가 권리행동 이해당한다는
사정되지 않는바, 상도유사행위의 권리행동
제한행동 인정한다.

2. 상도유사행부 (가) (가)

(1) 전체관찰원칙 및 비관찰원칙

판례는 2이상의 구성이 결합된 결합상도의 경우
전체로서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잡하여 전체
대시로 식별하는 방법,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체관찰원칙을 유래하기 위하여 일부만을 거ける

결론



대비-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2) 법저권 2항의 예

법저권 2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 그 부분만 사용 가능
있다고 한다. (특이점)

(3) 사망-상도유사

1) 2상도예 - '단박대주'

2상도 구성 중 '~~단박대주~~은 '우월개조'. 100% 여성 전문'

'원'들은 대부분 2항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단박대주'만이 2항에 식별력이 강하여, 그 결과 2항에

비슷한 '단박대주'이 차등양에 들어있어 2항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2상도에서는

'단박대주'이 2항이다.

2) 상도유사예

무상도 '단박대주'와 2상도 '단박대주'

2상도. 관습, 의관 모두 동일 유사하므로 동일 유사

상도에 사용하든 유사한 2상도 동일-충돌 우려

있는 유사상도이다.

3. 90리항권 등록제한예 (2주)

(1) 법저권 2항의 등록제한

판례는 법저권 2항에 따라 등록된 이상, 해당

상도 원재는 그 사용상도에 대해 등록권과 배타적

가치로, 90리에 의해 등록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사안 - 9021항과 제1항
따라서 '① 2상도 청구권' 단박대로이 기호제
두개시 해당항지각, 해당복합은 甲이 사안이
의한사변적 취득한부분이므로 계속제항되지
아니한다.

4. 2의 甲상도권 침해예방 및 甲권치

(1) 2 침해예방 (적극)

2상도권은 甲상도권 유사하고 계속제항되지
않으므로 같은 호제 甲상도권을 침해중이다.

(2) 甲권치 ① - 경리 등

甲은 2의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권은 만분의
위해 사권 등 2등을 할수있고, 이권취득을 기보하고
침해금지가치받. 이권취득을 기보로 가압류, 증거보전 등
할수있다.

(2) 甲권치 ② - 민사상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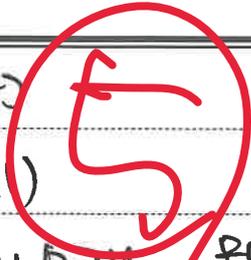
甲은 2에게 이권의 침해금지청구. 이권의 손해
배상청구등은 할수있다.

(3) 甲권치 ③ - 동사상권치

甲은 2에게 침해금지소 및 물권등을 인정할수
있다.

(계)

문제 4



I. 식별 (1)

1. 문제의 2차 - 문제상판 (1112)

책은 문제로부터 1상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바, 2차 등록업자이다. 다만 국내에서 상판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갖는바, 책의 2차 2차 문제상판 권리를 주장한다.

2. 책의 청구인적격

책은 상판권자로부터 수입에 판매하고 있는 1상판에 대해 법률상 본인이 발행 권리를 있으므로 이바람게인이 해당하여 문제상판허인 적격 있다.

3. 2 등극의 문제사유 - 법 제 42 조 1항 2호 (제 3)

(1) 이익 및 취지

권리자아병자가 신의정신침해에 위반하여 충분한 상판권 등록받을 수 있다.

(2) 무의중내사용인정판단기 (제 3)

1) 판례

외국의 상판권자가 해당 국내에서 사용할 바 없더라도, 수출은 전제로 외국에서 상판을 도시한역 상판은 그대로 제 3자가 국내로 수입하여 유통한경, 이는 외국 상판권자의 사용이라고 한다.

2) 사안 - 2 국내사용은 무의 중내사용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따라서 2이 202년부터 2의상표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유명시권행위는 2의 국내 사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3)사안 - 반대하거

준비중

따라서 2은 ① 2의 계약관계등이 인정되므로
② 2이 국내에서 사용행위는 ③ 알면서 ④ 2의
상표 X와 유사한 X를 ⑤ 2의상표 X와 유사한 X'에
주권하여 등록 받든바, 법가리항 20년의 묵시
사유 존재한다.

4. 2의무효사유 ③ - 법가리항 20년

(1) 2의 및 취지

따기 20년 6월 1일 반동한규정이다.

(2)사안

① 2이 인출기시 등록받든 ② 상표 X와 유사한 X'은
③ 상표 X와 유사한 X'에 ④ 2의 등록없고 통지없이
⑤ 2의 계약관계등이 인정되지만 2이한 주권으로
반대 취지이유 존재한다.

5. 판례 ① - 무효사판정

2은 2의 계약관계시 이해관계 인정되므로, 2 등록에는
법가리항 20년 2의 무효사유 있는바 무효사판
정구하여 등록소취시킬수 있다.

6. 판례 ② - 2의취득, 양수제한

무효사유 없음은 전체 2에게 상표등록 2의권취유하거나

자신에게 상도권은 인정하라는 형식 가능하다.

ㄱ. 특허(가) - 실시특약

현재 일반과 국내 특허권자다르바, 특허 국내 도입은 집중상도 형해 도입은 인정되지 않아 그 상도권 채택이므로 그에 실시특약 허용된다.

ㄷ. 실용(2)

1. ~~특이성이 없는~~ 가치이유 - 법적으로

(1) 특허-특이

선출원권리지보안인 일반수단차이인-공공배치 취지라, 선출원 상도타기인-유사성이나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다.

(3) 사안

특수 선출원한 2개의 관제에서 어느쪽의 사안은 유사한 2 상도 타기인으로 유사한바, 가치 가치이유 있다.

2. 특허(나) - 2 출원에 대한 가치

(1) 가치 36항

가치 36항에 따라, # 등록여부결정시에 고출원상도타기인 가치 36항을 가진다.

(2) 이익상도(60%) / 상도제(40%)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한 것임을 인정하면,~~ 그 출원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이

있다는 취지나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다.

3. 제1항 - 특허청장이

2항에 기재된 내용이, 특허청장이 제1항
에 기재된 내용에 있다.

4. 제2항 - 공조공리제

2024.5.1 시행 개정법은 2항은 유사성이기 때문이다
이유로 기재되는 사례 많고, 이를 때에 따라 1항에
합성해야 하는 본질적 차이가 1항에 유사성이
저속은 공조공리제 제2항에 극복 가능하게 하며
특정 대상에 공조공리제에 등록 여부 결정
전제 제2항은 때에 따라 특허청장이
있다.

[끝]

<이해사항>

양안 동등, 본질 동등
본질 동등 본질 동등
동등

[문제]

상표법은 이하를 아라 한다

I. 실문 1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위 (법제 180조 제1항)

바르브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정권한 한 국제출원은 이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 (법제 180조 제2항)

법제 180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등록일을 이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사후 지정된 경우, 사후지정일을 출원일로
본다

3. 국제등록일

본국안정에 국제출원서가 접수된 날, 국제등록일이 되나, 그날로부터
2개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접수된 경우, 국제사무국이 접수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된다

4. 사안

甲은 영국에서 2022년 9월 1일 등록된 ~~국제등록~~ "Barbour"를
기호등록으로 2023년 3월 10일 영국 특허청을 본국 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하였고, 2023년 4월 10일 국제사무
국이 접수되었다. 이는 본국 관청에 국제출원서가 접수된 날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된 것이므로 甲의 국제출원이
국제등록일은 본국안정에 국제출원서가 접수된 날인
2023년 3월 10일이 된다.

5. 특수한 판단 기준 설정

甲의 ~~국제출원~~ 한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을 때에는 국제등록일을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보기 때문에 甲의 국제출원은 국제등록일인 2023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 받게 될 것이다

II. 실문 2.1. 2의 상표 소멸시 취급

甲의 출원인 선원은 2의 등록상표를 이유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기결이유통지를 받았는데 甲의 출원인 등록 이후 결정사까지 2의 상표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면, 2의 상표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므로 甲의 상표는 등록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甲이 자신의 출원인 등록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본다

2. 무효심판 청구 및 심사보류 요청(1) 상표등록 무효심판 의의 취지 (법제 117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은 상표등록 관련 지정상품의 후기등록이praw 무효사유에 해당할 때 무효심판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련 무효사유

이와 관련하여 법 제 34조 제1항 제1호, 제20호, 제21호의 무효사유에 대해 검토해 본다

3. 法 제 34조 제1항 제 13호

(1) 의의 취지

국내 또는 외국이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상품을 표시하는 것
이라든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든지, 유사한 상표로, 부정관공
적용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2) 특정한 상품의 출처로 인식(적용)

특히 "Barbour"는 영국에서 의류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3) 부정관공적용 유무 (적용)

① 판단 기준 취지

비판대상 상표의 인지도, 창작의 정도, 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교섭의
유사 내용, 양 당사자 간의 관계, 출원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사실

2은 영국에서 4은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해오던 자로,
4은 2은 상표를 사용하였던 2은 교섭이 실패하였음으로 부구하고,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하였으므로 부정관공적용이 있다.

(4) 무효 사유 존재 (적용)

2의 상표는 法 제 34조 제1항 제 13호의 무효 사유가 있다

4. 法 제 34조 제1항 제 21호

(1) 의의 취지

~~계약관계 등의 관계를 통해 타인의 사용~~

계약 당사자에 등록된 상표라든지, 유사한 상표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계약관계를 동시에 있었던 자가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을 자정상품인 출원시, 등록받을 수 없다
	(2) 조약 당사국이 등록된 상품
	부인 상품은 조약당사국인 영국에 등록된 상품이다
	(3) 동일·고통 등의 계약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그로 영국에 부인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해온 것은
	부인 일정한 계약 관계에 있다
	(4) 동의 여부
	부인에게서 동의를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무효사유 여부 (적용)
	그의 상품은 법제 34조 제 1항 제 2호의 적용 대상 에 있다
5.	상표권 공권형상 (법제 34조 제 1항 제 2호 관시)
	(1) 의의
	그 타인으로부터 상품들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상품들을
	을 받을 수 있다.
	(2) 수반
	부인 그로부터 상품권 등의 형상을 관하여 자신의 상품
	등록을 조항할 수 있다.
6.	상표권의 포기 권리
	부인 제 2호 상표의 권리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 2호
	포기를 권유하여 자신의 상표의 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말소

등록해 할 수 있다

7. 상표권이 양도 권위

무엇은 2에게 등록업무 완료시까지 상표권의 양도로 권위하여
이전등록 하면 자신의 출원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 2]

I. 선택

1. 출원인 유형 - 지리적 표시 단체 표상 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또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상으로, 이는 단체표상권과 및
소속단체원의 명칭 등의 상품유치 표시와 거래상 식별자를 보호
하기 위함이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상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상의
출원인이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상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의 정밀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등록 가능성 검토

(1) 주체적 요건

① 절차 제3호 제2항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생산, 제조, 가공할 다

스 구성된 법안은 각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고

② 수안

甲은 보성군에서 녹차를 생산하는 갑사들과 그로부터 녹차를 납품받아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각의 공으로 설립한 법인이므로 ~~각리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객체적 요건

① 법 제 23조 제 1항 제 1번 (각리표시정인)

상표의 품질, 명칭,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보성군의 특정한 기후로 인해 흙 햇빛과 그외 잘만들어라는 표현을 갖추어 주지 못이 같바 이는 흙으로 인해 녹차가 라메라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라는 "보성녹차"는 각리적 표시에 해당한다

② 법 제 23조 제 1항 제 6번 (각리표시단체표장정인)

각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당장은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가 공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행하거나 소속 단체원들에게 사용하게 하여 위한 표시의 "보성녹차"는 이기 부합한다

(3) 소결

따라서 甲의 "보성녹차"는 각리적 표시 단체 표장의 등록가능하다

II 실문 2.

1. 관련 요문 - 법제342 제항 제8호

(1) 의의·취지

선출에 의해 타인의 지적 표시 단체표장나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는 선출권과 유사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요인·훈등은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

① 판단 기준 취지

상표의 유사 판단은 표장의 디자인, 모양, 단념은 전체적, 객관적, 개략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요인·훈등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② 요부판정 취지

상표 중에 특정하여 상표의 표시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가 있는 경우, 직결한 전체안배 결론은 원하기 위해 요부를 가리지 상표의 유사판단 할 수 있다.

③ 사안

2위 출원 상표 "오리문 보성누차"에의 "보성누차"는 주요이 지적 표시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리문"이라는 구성요소가 이를 압도한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원의 지적 표시 단체 표장인 "보성누차"에 유사범위에 있는 상표 표장이 될 것이다.

2. 등록 가능성 검토

2의 출원 상품 중 "코리온"이라는 부분이 "보성녹차"의 식별력을 양호한 정도의 식별력을 가진 수요자들에게 출제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면 등록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
기 많은 경우에는 ~~특 제 33조 제 1항 제 2호를~~ 이유로
거절될 것임.

기타 심사, 명세서 검토!

[문제 3]

1. 문제 1.

1. 특 제 33조 제 1항 제 1호

(1)의의·취지

그 상품의 성질을 보통의 사용법으로 표시된 표상만으로
된 상품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상품 거래상 우위
개별 필요한 표시인 특정 사용은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사안

무은 "린박대추"를 '대추'를 자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했는데
"린박대추"은 다른 시간안에 대추를 할 수 있는 대추
은 직강사된다. ~~그러므로~~ 이는 기능적 표상에 해당한다.

2. 특 제 33조 제 1항 제 2호

(1)의의·취지

특 제 33조 제 1항 제 2호 내지 6의 리에 수요자가 누구의 경우에
관련된 상품을 표상한 것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다.
	(2) 판단기준 채택 그 상품이 왜든 있는 관습, 자정상품이라 한테, 제대사회의 인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3) 사안 사실상 "단백대출"은 '대부집'과 관련하여 자라생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용의상 특성이기에 그 상품을 독립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3.	심사관의 판단의 타당성 (적극)
	甲이 출원한 "단백대출"은 자정상품인 '대부집'과 관련하여 관습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뜻이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는 기술적 표상에 해당하여, 이러한 기술적 표상을 특성이기에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심사관의 법제 33조 제1항 제3권과 제7권을 기점으로 甲의 출원이 득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4.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법제 33조 제2항
	(1) 의의 법제 33조 제1항 제3권 내지 7권에 해당하는 상품과 관련된 사용권 등과, 사후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품을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품등을 받을 수 있다
	(2) 취지 상품의 사용과 및 수확의 보전 취지로 사용주요적 요소를 가미한 것



(3) 후원 권부터 그 심도를 사용

무은 후원 권부터 직립대출방식과 관련하여 "단박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과 동일성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무의 사용은 후원권부터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실사용상호의 사용권적 차이

① 판매권 위계

사회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호의 선제적 사용에 영도그제에 한해, 그와 유사한 상호의 채택자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와 동일성이 있는 상호의 장기간 사용은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된다

② 시간

무은 2022년부터 '직립대출방식'에 대하여 "단박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과 관련하여 동일성 있는 범위에 해당~~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넷 단박대출", "전라단박대출" 등의 실사용상호로 사용했는데 이와 같은 사용의 식별력은 강대리의 강인 "단박대출"이라는 부분은 독립성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동일성 있는 상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5) 작성상호

사용한 상호 그 자체에 한하지만 그와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 '직립대출방식' 관련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무은 심사관에게 ~~사용~~ "단박대출"이 ~~각용~~ ~~의한~~

대부분에게서 3위로 평가되고, 매년 6백만여 애플은 하루
 등의 이유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의견을 제출하여 등록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II 실문 2

1. 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타인의 등록상표나 등록한 상표 그 각정상품과 유사한 상표
 사용하게 타인의 등록상표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에 사용한 행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본조

2. 甲 상표권의 효력

甲의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별다른 무효사유로
 보아지 않으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3. 상표취지 보충명위 내 사용금지 (유사판단)

(1) 상표의 유사판단 취지

상표의 중복 유사여부는 상표의 리관, 호칭, 관념은 전체적, 객
 관적, 이적적인 관찰하여 후자의 3인, 호칭 무리가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한다

(2) 모부차별 취지

전항상표 상표로 구경하는 전체에 의하여 상기는 리관, 호칭,
 관념은 주된인 상표의 유사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목적이 다른 양상을 식별할 수 있는 모부가 있는 경우

이는 모두는 가리고 유사판란한 수 있다

(3) 사안

'주 상품'은 "100% 저성전통", "퀵", "원천", "간략대출"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품인 데다가 "간략대출"은 독립하게 독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하여 주 상품과 배합했을 때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그리고 甲의 자정상품인 '대부집'에 동일하게 상품을 사용하 있어 甲의 상품을 甲 상품의 모방하기 속한다

4. 상품의 사용의 여부

주 상품, '대부집'에의 상품의 사용에 해당한다.

5. 기타.

주 상품 甲으로부터 정당한 원인은 부여받지 않는 선사용으로 인하여 가리고 있으며 甲 상품에 대한 희박 제한 사유로 甲의 상품권 하에 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 甲이 취할 수 있는 권리

(1) 침해금지청구 (법 제 1092조 제 1항)

甲은 甲에게 침해의 금지로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 (법 제 1093조)

甲은 甲의 상품권은 침해한 甲에게 甲의 받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甲의 사용이 침해인지 여부

甲의 사용은 甲 상품을 침해한 것이다



[문제 4]

3. 실문

1. 특허권 수권 조항 - 무효심판 청구 (법 제133조)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호권리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수 무효사유 Y 상용권 수권하여 판매한 것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 무효심판 청구 가능함

2. 상용권 사위

법 제 34조 제 1항 제 2호, 제 2항가 무효권리

3. 법제 34조 제 1항 제 2호

1) 의의 취지

계약관계 등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상용권에 상용권지정권만 면해서 그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다

2) 계약관계 의무

같은 특허의 판매계약을 통해 특허권리 Y 상용권 수권하여 한국에서 판매해 왔다. 그러나, 따라서 계약관계는 있는 것이면 된다

3) 상용권에 상용권지정권 안고 있었던 것

같은 특허 X 상품을 출원한 것은 안고 X 상품과 유사한 X' 상품은 한국에 출원하였는데 특허의 계약을 통해 신의 약자가 형성된 상태인 것은 이러한 특허의 상용권지정권을 안고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4) 노점

2의 ~~출원~~ 상표는 특제4호 제1항 제2단의 무효사유가 있다

4. 특제4호 제1항 제2단

(1)의의·취의

3약양사채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일정한 계약 관계 등에 있었던 자에 상표에 관한 권리는 가진 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그 상표의 자칭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경쟁행위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

2의 3약양사채에 등록된 상표

4의 상표 X는 일종의 2024년 5월 7일까지 등록받은 상표이다

(3) 일정한 관계가 있다

같은 분야의 판매 계약으로 신의관계가 형성되고

예 등의 경우

2의 4에게 등록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노점

2의 상표는 특제 34호 제1항 제2단의 무효사유가 있다

5. 실문 2.

1. 4이 출원 수 있다 고 회

4은 2의 출원이 계속 중인 상태에 있어 정보제공, 출원양도, 취하 권유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의 출원이 4이 출원의 등록청정기까지 소멸된 경우에는 4은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

무엇이든 회원이 출제되면 제1항 제2호, 제2항의 기정사유가 있음은 정보제공하여 이의신청을 해 회원은 기정사유 수 있다

3. 회원의 양로 권위

무엇이든 회원이 양로 권위이며 회원은 양로받을 수 있다

4. 회원의 취가 권위

무엇이든 회원이 기정사유를 근거하여 회원이 취가는 권위할 수 있다

신뢰 부탁드립니다

